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입주대상 주택

■ 대상주택

-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2,770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주택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 2인가구는 1형, 2형 중 1주택에 신청 가능. 다만, 서울지역의 경우 1형(1인 이하), 2형(2~4인)
- 가구원 수에 따른 주택유형에 대해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5.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조건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주택내역” 참조 * 게시된 임대조건은 계약체결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 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5,420원, 그 외는 49,170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전환단위 : 10,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3.0% (※전환단위 : 10,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무보증금 월세제도 ①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의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제주도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보증금 완화제도

①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②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 임대료에 합산

※ 보증금 완화제도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환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 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5,420원, 그 외는 49,170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전환단위 : 10,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적용되지 않음

* 2015년 하반기 이후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 외부 위탁이 시행되어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입주자격,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5.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 신청자의 직계비속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세부 자격요건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우선공급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 미구비 주택)하거나 - 소득대비 임차료(임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자
1순위 일반공급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2순위	월평균소득 7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3순위	월평균소득 10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소득보유 기준

구분	소득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1인	2,645,147원 이하	1,851,603원 이하	1,322,574원 이하
	2인	4,379,809원 이하	3,065,866원 이하	2,189,905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3,938,828원 이하	2,813,449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4,358,439원 이하	3,113,171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4,856,848원 이하	3,469,177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5,315,858원 이하	3,797,042원 이하
	7인	8,249,812원 이하	5,774,868원 이하	4,124,906원 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소득 산정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소득산정방법

- 소득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소득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입주신청

- 입주신청은 1세대 1주택에 한해 동·호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 1순위 우선공급내 경쟁시 아래 선정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1순위 일반공급 입주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인(소득 70%) 우선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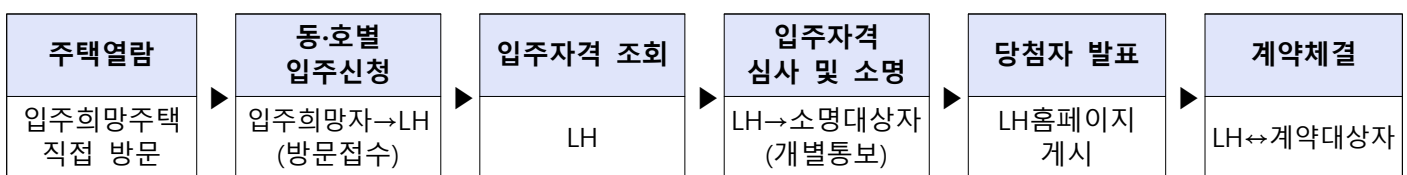
-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우선공급 또는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 선정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사업대상지역거주자(사업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 → 소득이 낮은 자 → 가구원수가 많은 자 → 추첨

* 사업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4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일정 및 장소

■ 입주자 선정절차



* 해당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주택, 소득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현장 방문접수만 유효하며 우편/팩스 접수 불가

■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자에 따라 접수, 선정결과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유형별 신청접수일이 다른 지사가 있으니 10~12p(지역별 신청접수 장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 1순위[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청 자격	주택열람	대상주택 게시	신청접수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계약체결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1순위 우선공급	'20.06.11.(목) ~ 06.13.(토) [3일간] (10:00~16:00)	'20.05.29.(금) [LH 홈페이지] (공고시 게시)	'20.06.17.(수) ~ 06.18.(목) [2일간] (10:00~16:00)	'20.07.10.(금) [LH 홈페이지] (17:00)	'20.07.14.(화) ~ 07.16.(목) [3일간] (10:00~16:00)	이하 지역별 접수장소 참조

- 신청대상자 : 1순위(장애인, 소득 50% 이하자), 2순위(소득 70% 이하자), 3순위(소득 100% 이하자)

신청 자격	주택열람	대상주택 게시	신청접수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계약체결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1순위 일반공급	'20.06.11.(목) ~ 06.13.(토) [3일간] (10:00~16:00)	'20.06.22.(월) 18:00	'20.06.23.(화) ~ 06.24.(수) [2일간] (10:00~16:00)	'20.07.24.(금) [LH 홈페이지] (17:00)	'20.07.28.(화) ~ 07.31.(금) [4일간] (10:00~16:00)	이하 지역별 접수장소 참조
2순위		'20.06.26.(금) 18:00	'20.06.29.(월) ~ 06.30.(화) [2일간] (10:00~16:00)			
3순위		'20.07.01.(수) 18:00	'20.07.02.(목) ~ 07.03.(금) [2일간] (10:00~16:00)			
무순위		'20.07.06.(월) 18:00	'20.07.07.(화) ~ 07.08.(수) [2일간] (10:00~16:00)	(*무순위는 추첨결과 발표)	지역본부(지사) 개별안내	

* 입주순위별 신청가능 대상자

구분	신청가능 대상자
1순위 우선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고령자
1순위 일반	장애인, 소득 50% 이하자
2순위	소득 70% 이하자
3순위	소득 100% 이하자
무순위	소득 100% 이하자

* 신청순위별 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6: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 주택열람은 '20.06.11.(목)~06.13.(토) 10:00 ~ 16:00까지 3일간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LH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주택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신청자 있는 주택 확인)
- *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앞 순위에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 후순위 대상주택 목록,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등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분양정보 - 공지사항 (주거복지)에 게시됩니다.
- *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1순위내 우선공급 및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는 2순위, 3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2순위는 3순위, 무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3순위는 무순위로 처리)

■ 입주자 무순위 모집 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접수기간 '20.07.07.(화)~07.08.(수) 10:00~16:00)
 - * 주택유형(1, 2, 3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도 신청 가능
- **1세대에 2인 이상 및 순위내(무순위 포함)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함**
 - * **1, 2, 3순위 입주신청자의 무순위 신청 불가**
-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또는 주거복지지사) 관할지역의 3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에 대해 일괄접수를 받아 무작위 추첨(LH 전산시스템 활용)을 통해 추첨순번에 따라 미계약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
- 3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의 3배수까지만 순번을 배정하고 이후 순번은 낙첨처리하며, **추첨결과는 '20.07.24.(금) 17:00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
(예시 : 미신청 물량이 10호이며 무순위 신청자가 50명인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30명까지만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하고 잔여 20명은 낙첨 처리)
- 추첨순번은 금회 무순위 신청 건에 한해 유효하며, 선순번자에서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잔여주택이 소진된 경우 후순번자의 동호지정 권리는 상실됨
- 무순위 계약대상 주택은 순위별 계약체결 이후 잔여물량에 한하며, **계약체결은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또는 주거복지지사)에서 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예정**

5

신청서류 등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0.05.29.)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필수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1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LH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에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센터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주민센터	1통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1통
추가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1통
	임신진단서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1통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1통

■ 1순위내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추가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 1순위내 장애인 추가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주민센터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본인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서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주거복지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신청 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주택열람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조건	•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수 있습니다.																																	
	- 무보증 월세제도 : 생계 또는 주거급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본 임대조건(또는 보증금 완화 제도)을 적용하여 처리																																	
	- 보증금 완화제도 : 입주자격 순위가 변동되더라도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하여 처리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table><tr><th rowspan="2">입주자격</th><th rowspan="2">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th><th colspan="2">할증비율(기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th></tr><tr><th>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th><th>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th></tr><tr><td rowspan="3">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td><td>52.5%초과 55%이하</td><td>10%</td><td>20%</td></tr><tr><td>55%초과 65%이하</td><td>20%</td><td>40%</td></tr><tr><td>65%초과 75%이하</td><td>40%</td><td>80%</td></tr><tr><td rowspan="3">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td><td>73.5%초과 77%이하</td><td>10%</td><td>20%</td></tr><tr><td>77%초과 91%이하</td><td>20%</td><td>40%</td></tr><tr><td>91%초과 105%이하</td><td>40%</td><td>80%</td></tr><tr><td>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까지</td><td>100%초과 105%이하</td><td>40%</td><td>80%</td></tr></table>				입주자격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할증비율(기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52.5%초과 55%이하	10%	20%	55%초과 65%이하	20%	40%	65%초과 7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까지	100%초과 105%이하	40%	80%
	입주자격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할증비율(기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52.5%초과 55%이하	10%	20%																														
		55%초과 65%이하	20%	40%																														
65%초과 7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까지	100%초과 105%이하	40%	80%																															
• 일시적 소득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 합니다. (단,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이하 참고)에 따릅니다.
입주자선정	신청접수는 입주 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입주자의 계약체결시 후순위 입주대상 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계약안내	선순위 신청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점처리됩니다. 추후 통합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시기	- 입주지정기간은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공급대상 주택 목록 중 별도의 입주예정시기가 기재된 주택은 공고일 현재 보수 중인 주택으로 실제 입주시기는 계약체결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단, 입주가능시기는 공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주소변경 통 보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 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에는 상환이 필요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 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5년부터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014년 9월부터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고객센터 - 매입임대 해약신청(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온라인 해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지역별 신청접수 장소

공급대상지역	신청접수 장소	연락처
강원 원주시	LH 원주권주거복지지사 원주시 양지로 26, 원예농협하나로마트 3층	033-737-7712 033-737-7700
경기 안산시, 안양시	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55(관양동) 대고빌딩 2층	031-467-5784
경기 오산시	LH 오산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36 (세교동)	031-377-9434
경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LH 용인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중동) 쥬네브 스타월드 9층	031-280-4712 031-280-4731
경기 안성시, 평택시	LH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서정동 319-3), 아트타워 2층	031-8094-5027 031-8094-5015
경기 화성시	LH 화성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프라자 4층 (동탄 신라스테이호텔 옆 건물)	031-831-2465
경남 사천시, 진주시	LH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경남 진주시 술밭로 121번길 씨티프라자 2층	055-922-1500
경남 김해시	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김해시 장유로 270 (부곡동) 2층	055-907-8100 055-907-8132
경남 양산시	LH 양산권주거복지지사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2층	055-362-7281 055-362-7282 055-362-7254
경남 밀양시, 창원시	LH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용호동4-2) 2층	055-210-8331 055-210-8332 055-210-8333 055-210-8334
광주 광산구	LH 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우산동) 우산행복주택 상가동 3층	062-441-2986
광주 북구	LH 광주북부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00번길 11-5 첨단행복주택3단지 상가 2층	062-410-1924
전남 광양시, 순천시	LH 순천권주거복지지사 전남 순천시 중앙로 260 (석현동87번지, KT북순천지사3층)	061-900-4322
경북 경주시, 영천시, 포항시	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69, 명선빌딩 2층 (포항 세명기독병원 부근 기업은행 건물2층)	054-280-4750 054-280-4763
경북 안동시, 영주시	LH 경북북부권주거복지지사 경북 안동시 광명로 166 한양빌딩 3층	054-851-9932

경북 구미시, 김천시	LH 경북서부권주거복지지사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7 용은빌딩 1층	054-450-3800
대구 동구, 수성구	LH 대구동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로 40 명진빌딩 4층	053-960-3631 053-960-3627 053-960-3614
경북 칠곡군, 대구 남구, 북구, 서구	LH 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도원동), 2층 커뮤니티실 *계약 장소 신청접수 시 별도 안내	053-603-2935 053-603-2936 053-603-2937
대전시 대덕구, 유성구	LH 대전북부권주거복지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74번길 12, 1층	042-470-0200
대전시 서구, 중구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둔산1동 1380) 1층 행복나눔센터	042-470-0200
충남 아산시, 천안시	LH 천안권주거복지지사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	041-538-5823 041-538-5826
대전 동구, 충남 논산시, 보령시	LH 충남남부권주거복지지사 대전시 동구 우암로 250 나로프라자 5층	042-349-4610
충남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홍성군	LH 충남북부권주거복지지사 충남 공주시 신관로38 주원빌딩 3층	041-854-8359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LH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24(초량동) 6층	051-460-6921 051-460-6922
부산 동구, 중구, 남구, 북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사상구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24(초량동) 6층	051-460-5599 051-460-6818 051-460-6838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LH 울산사업본부 주거복지사업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한화생명 2층	052-932-4821 052-932-4822
경기 남양주시, 가평군	LH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프라자 5층	031-590-6681
경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LH 양주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0층	031-822-4036 031-822-4085
경기 의정부시, 포천시	LH 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8층 [1호선 의정부역 3번출구 전방180m전방, 경전철 의정부역 2번출구 대각선] ※ 주차불가 대중교통이용 요망	031-822-4025 031-822-4026
세종시	LH 세종권주거복지지사 세종 한누리대로 296 4층	044-902-2300
경기 김포시	LH 김포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10층	031-8048-5322
경기 시흥시	LH 시흥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60번길 28 경인성빌딩 3층	031-362-7713 031-362-7720

인천 남동구, 옹진군, 중구	LH 인천남동권주거복지지사 인천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7번길 12(구월동 1542-2), 두용프라자 6층	032-717-5218 032-717-5224			
인천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LH 인천북서권주거복지지사 인천시 남구 경인로434(에이스빌딩 10층) <table border="1"> <tr> <td>1순위 우선 신청접수일자</td><td>20.06.17(수) 20.06.18(목)</td><td>1형, 3형 2형</td></tr> </table>	1순위 우선 신청접수일자	20.06.17(수) 20.06.18(목)	1형, 3형 2형	032-890-5280 032-717-8536
1순위 우선 신청접수일자	20.06.17(수) 20.06.18(목)	1형, 3형 2형			
전북 군산시	LH 익산권주거복지지사 임대상담실 전북 군산시 동아로 12 산북부향 1차 108호	063-840-0927 063-840-0920			
전북 익산시	LH 익산권주거복지지사 전북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금오빌딩 5층	063-840-0927 063-840-0920			
전북 김제시	LH 전북남부권주거복지지사 전북 김제시 금성로 140, 김제검산3 휴먼시아 관리사무소	063-570-2319			
전북 남원시	LH 전북남부권주거복지지사 전북 남원시 가방뜰길 57, 남원금동2 휴먼시아 관리사무소	063-570-2314			
전북 완주군, 전주시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본관2층	063-230-6471 063-230-6472 063-230-6473			
충북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복지동(별관)	043-901-4530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문의사항	LH 콜센터 1600-1004
인 터 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전월세 관련 법률 및 금융상담	전월세지원센터(www.jeonse.lh.or.kr) 1577-3399

2020. 05. 29.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05.0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항목 설명 및 출처

구분	항목	소득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 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도매·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 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 유형	☐ 2인 이하 가구용		☐ 2~4인 가구용		☐ 5인 이상 가구용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가구원수별로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가능합니다. 2. 신청 이후 주택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주택	소재지							
	호	층 수	방 수	면 적(m ²)				
				계	전 용	공 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	해당시.군.구 전입일		년 월 일		
신 청 순 위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임대조건) ☐ 무보증금 월세제도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만 해당						
		☐ 장애인(월평균소득 70% 이하) ☐ 월평균소득 50% 이하자 ☐ 장애인(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2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자		3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주 택 및 자 산 현 황	☐ 무주택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여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득 등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3.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갭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무순위)				접수번호
신청시 유의 사항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가구원수별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세대에 2인 이상의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3. 1~3순위의 기 신청자는 무순위 신청이 불가합니다. 4. 3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에 대해 일괄접수를 받아 무작위 추첨(LH 전산시스템 활용)을 통해 추첨순번에 따라 미계약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입주신청시 동호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님 5. 3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의 3배수까지만 순번을 배정하고 이후 순번은 낙첨처리합니다. 6. 추첨순번은 금회 무순위 신청 건에 한해 유효하며, 선순번자에서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잔여주택이 소진된 경우 후순번자의 동호지정 권리는 상실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 -		
신청자격	무순위	☐ 무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자격 검증	<자격검증> 1. 무주택여부 및 소득검증은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득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3.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을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 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제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4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복지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 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추가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감정원 금융결제원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귀하